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9.

여성가족위원회

목 차

I . 감사의 목적	1
II . 감사기간	1
III . 감사실시 대상기관	1
IV . 감사실시 경과	2
1. 감사반 편성	2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V . 증인 및 참고인 현황	5
VI . 주요감사 실시사항	6
1. 여성가족부	6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5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5
4. 양육비이행관리원	25
VII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1. 여성가족부	26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6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6
4. 양육비이행관리원	3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II. 감사기간

○ 2024. 10. 30(수), 10. 31(목) [2일간]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개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1개 기관)
총 7개 기관	

IV.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함.
- 감사반 : 17인

구 분	교섭단체(정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국민의힘	이 인 선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 한 규	간 사
		김 남 근	
		김 남 희	
		김 용 만	
		백 승 아	
		서 영 교	
		이 연 희	
		임 미 애	
		장 철 민	
		전 진 숙	
	국민의힘	김 상 욱	간 사
		서 범 수	
		이 달 희	
		조 은 희	
		한 지 아	
	조국혁신당	김 선 민	

○ 사무보조자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사무보조자	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정책 입법심의관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여성가족정책 입법조사관 행정관 주무관 행정관	이 옥 순 김 정 연 김 월 래 표 승 연 김 혜 리 박 형 진 황 명 숙 김 안 희 최 경 희 오 다 솔	
	의정기록 주무관	이 유 진 유 희 정 이 윤 정	
	정 책 연 구 위 원	이 서 현 안 경 희	더불어민주당 (4급상당) 국민의힘 (2급상당)

2.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감사반
10.30(수) 10:00	○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위원회 회 의 실 (본관 550호)	위원 전원
10.31(목) 10:00	○ 현장시찰	서울시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위원 전원

V.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여성가족부 : 10인

연번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장관 직무대행	신영숙	2024.10.30.(수)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2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	"	
3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	"	
4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	"	
5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	조용수	"	"	
6	대변인	김가로	"	"	
7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윤세진	"	"	
8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	"	
9	가족정책관	최성지	"	"	
10	운영지원과장	남상희	"	"	

2. 산하기관 : 6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 장 직무대행	김은희	2024.10.30.(수)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2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이 사 장	손연기	"	"	
3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 사 장	윤효식	"	"	
4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이 사 장	박구연	"	"	
5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원 장	신보라	"	"	
6	양육비이행관리원	원 장	전주원	"	"	

3. 일반증인(2인)

연번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시	출석장소	신문요지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비고
1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2024. 10.30. (수)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질답	
2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	"	

4. 참고인(2인)

연번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시	출석장소	신문요지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비고
1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 센터 대표	2024. 10.30. (수)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본청 550호)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점검	
2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	"	

VI. 주요감사 실시사항

1. 여성가족부

가. 여성정책

(양성평등)

- 2023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격차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105위로 2022년(99위)에 비해 하락하였고, 현 정부의 여성장관 비율은 16%로 OECD 평균(29%) 보다 낮으며, 여성차관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한 바, 여성 장·차관 비율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이며, 여성정책 비서관이 없는 상황인 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하고, 여성정책 조율을 위한 여성정책 비서관을 두는 등 성평등 인사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현 정부의 성불균형 인사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책임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을 촉구함.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9차 최종견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배상과 공식적인 사죄”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2024년 10월 9일 여성인권 문제 관련 유엔회의에서 일본 대표의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역사적 사실 부인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대응에 문제가 있음.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이행권고사항(여성가족부 지원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위안부 피해자 구제 및 배상)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반드시 대면회의로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174곳(53.2%)이 임원 정수 100분의 20 이상 여성 배치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2023년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자체수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87곳 중 51곳(58.6%)에 달하며,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 중 상임임원은 총 50명(6.6%)에 불과한 바,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8%, 육아휴직 ‘10개월~12개월 사용자’ 비율은 여성 73%, 남성 40%로,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휴직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짧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의 원인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별임금격차 등으로 보이는데,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함.

(성별영향평가)

- 2023년 7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인 “정책개선 이행률”이 일몰지표에 해당되므로 지표수정 등 지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정책개선계획 산출율로 지표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를 개발한 이유, 개선과제 이행을 점검할 방안 등에 대해 보고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필요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축소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획 제출이 필요함.

(양성평등담당관)

-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는 서면이 아닌 대면방식의 회의운영이 필요함.

(국립여성사박물관)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초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

로 하였으나,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일시 정지상태로 2024년도 예산도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가족정책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서비스이용 비용의 획기적인 지원 등 아이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아이돌보미와 가정 간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공적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아이돌보미 노동자 처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은 자격제도 도입과 민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인데 민영화와 연관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가족친화인증제도)

-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 비율이 중소기업은 1.1%, 대기업은 7.7%에 불과함에도 인증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유인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일·가정양립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양적 확대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가족친화기업 인증위원회가 1년에 1회 개최되는 등 제도 운영의 부실로 인증제도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필요함.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결혼중개업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상 검색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각 삭제요청 및 추가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며,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지원)

-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매년 증가하여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이 33억원 가량 삭감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주거안정 지원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이 2024년 8월 기준 580건에 달하는 반면, 부정수급액의 환수비율은 28.5%에 불과한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 파악이 가능하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양육, 주거, 학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바, 사후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함.

(저출산 대책)

- 저출생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 지원 등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 기간만큼 정년 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소개팅 사업은 중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

-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동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고, 교통비(4,000원)도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등 처우가 열악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우도 제각각인바, 방문지도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군산시가족센터 수탁기관의 불법, 비리, 비상식 운영 제보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 후 군산시 및 센터와 협의하여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바,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하여 질의함.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리)

-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모집 공고문의 자격요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비 관련 소송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명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는 민간 법무법인 대비 소송 건수가 많고, 직접소송보다 위탁소송 비중이 높으며, 양육비 이행을 결과값이 직접소송은 59.4%, 위탁소송은 27.6%로 2.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만족도도 직접소송은 83.1점으로 위탁소송(65.6점)과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만 직접소송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분원 설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청소년정책

(청소년지원사업 축소)

- 청소년 근로권익사업이 2024년 폐지되었고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버스 사업도 2025년에 폐지할 계획인바, 청소년 근로권익사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소년 상담버스 운영도 청소년과 농어촌지역 등의 특성상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개 혹은 유지가 필요함.

(위기청소년 지원)

-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시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마련을 위하여 주거 지원 자격 요건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 우울증을 진단받은 아동·청소년이 2023년 6만 7,000명으로 2014년(약 2만 2,000명) 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0대 자살률 및 자살시도자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자살시도자 아이들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을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상담사자격연수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전국 청소년상담사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함.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억제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전자담배 구매시 보다 엄격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경로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며, 전자담배 판매시 편의점 계산대 앞이 아닌 뒤에 진열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배포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문제 등 청소년에 대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플랫폼별 유해정보를 상시점검하고 삭제요청 후 삭제조치 결과 확인이 필요한바, 플랫폼 사업자별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2024년 관련 예산은 감소되었는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청소년 도박 및 마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치유 지원 및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 스팸문자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스팸 문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 2024년 신규사업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당 인력 충원 없이 사업비만 책정하여 센터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담당자를 채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시 담당인력 인건비를 편성하는 한편, 현장에서 담당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직원은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등 재단 법인인 청소년미래재단 행정지원실 업무 과다로 각 센터 직원 1인을 행정지원실로 파견하여 법인 사업(청소년박람회, 소통공감대회, 학교 밖 청소년 체육대회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전국 센터의 인력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의 임금은 병원 등 타 기관 근무자의 임금 보다 월 100만원 이상 낮아 임상심리상담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을 파악하여 고위험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임상심리상담사의 채용이 원활하도록 현실에 맞는 보수를 책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예산부족으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이용 인원, 급식 수량·단가 및 예산 문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소한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이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퇴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 명확한 입·퇴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하여 호봉제 도입 또는 그에 준하는 연차 상승에 따른 보상 방안 및 위험수당 신설과 업무상 상해 및 물품 파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을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수수료 및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지원)

- 2024년도부터 사업이 폐지된 청소년국제교류 중 ‘청소년 국외역사문화체험활동’은 국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류활동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미래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추진이 필요함.
- 유사 중복되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경우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기구로 발전시켜야 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의 홍보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단가는 10여년 간 동결되어 학생들의 급식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급식단가를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급식단가 기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단가 등에 맞추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의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침구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도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함.

(국립청소년수련시설)

- 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독립기념관 부지 반환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독립기념관과의 협의 및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지 반환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립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전용 4차산업 체험센터나 미래기술체험관 등 미래기술 체험공간 조성이 필요함.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 보험 개설 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타 부처 유사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쉼센터 사업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 정책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재편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라. 권익증진

(여성폭력, 스토킹범죄·교제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2024년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고 2025년도 예산안에도 감액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상담지원 통계가 가정폭력 건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어서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통계 수집이나 정보제공이 미흡한바, 개선이 필요함.
- 여성폭력통계에 교제범죄에 대한 통계가 없는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유의미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므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반의사불벌죄에서 교제폭력을 배제하거나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주거면적이 교도소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인 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26개소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를 참고하여 1인당 할당 공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아동 동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쉽터에서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의 경우 서울시는 10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된 반면, 집행률이 25%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예산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집행부진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톡·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하여 긴급 피난 보호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입소율이 각각 58.6%, 42.8%로 저조하므로, 경찰,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 및 피해자 인계를 통해 주거 지원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5개소 중 2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장기 보호시설은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하고, 단기 시설은 입소기간이 6개월이 원칙(최대 1년)이라 자립을 준비하기엔 부족하므로,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사항을 가릴 수 있는 제도를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가정폭력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관련 상담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들의 연계 및 홍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이란 명칭은 남성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정폭력방지법」도 긴급전화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폭력긴급전화 1366”으로 바꾸고 상담과정이나 인력도 남성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10대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청소년 교제폭력을 잘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양육자와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과 관계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비폭력적인 연애 관계를 증진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이팅매터스(Dating Matter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는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고 오프라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지촌 여성에 대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기지촌 피해여성 생활안전 지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성매매로 인한 직간접적인 질환’에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골절, 상해, 노환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

지존 여성 중 대법원판결 승소자에게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미군 주둔지에서 기지존 여성의 성병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및 철거하더라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여성가족부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라는 의견이 제시됨.

(성희롱·성범죄 관련 정책)

- 성희롱·성폭력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실적은 2021년 3.63%에서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1.13%에 불과함.
- 만화카페 ‘벌튼’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밀실을 만들고, 해당 장소에서 학생들의 성관계, 성착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튼에 대한 진상조사 및 만화카페에 대한 지자체·교육청·여가부·경찰 합동 일제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4년 9월 일본 픽업아티스트 단체 ‘스타난 일가’ 구성원들이 한국 원정을 떠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얼굴 사진과 녹음을 SNS에 게시한 사건이 있는데, 이 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 온라인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픽업아티스트 강의란 포장 하에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법적으로 제재할 장치

가 전무한 바, 성범죄 공간이 된 네이버카페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단순한 딥페이크를 넘어서 여성을 성착취 대상, 놀이 대상으로 보는 뼈뿔어진 인식 및 이와 관련한 영상·사진이 계속 유포되는 2차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함.
- o 실제 군 내 성범죄 발생건수 대비 여성가족부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통보서 제출 건수가 현저히 적은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주무부처로서 여군대상 성범죄 현황 파악, 사전예방, 사후조치 등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o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 및 지방비 수당 지원 등에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바라기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의료법인,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게 지원하는 퇴소자립지원금의 지급조건인 ‘6개월 시설 생활’, ‘성인이 된 이후 퇴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예산이 매우 적으며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바,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o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바라기센터 10개소에서 성폭력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조치가 제한되어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된 곳이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o 최근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성범죄를 마치 놀이문화처럼 여기는 광고도 나오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와 협

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 o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8~10월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성착취물 사건 영상물들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고 있으며, 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정원은 4년째 제자리이고 익명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o 딥페이크 영상물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플랫폼 업체들 스스로 딥페이크 영상물들을 사전에 탐지·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이나 미국의 행정명령에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미 플랫폼업체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AI기본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o 딥페이크 성착취 피의자 중 83.7%가 10대 청소년인 등 피해자·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이 필요함.
- o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의자 98%가 남성인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와 뿌리 깊은 성적 대상화 문화가 본질적 문제로 보이므로, 청소년들의 성인식, 성문화, 성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 o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를 넘어 범정부적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
- o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포물의 빠른 삭제인데,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삭제지원 인력은 39명에서 41명으로 단 2명 늘어나고 예산은 2024년 보다 약 2억원이 감액된 32억 6,9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정부 대책이 안일한 측면이 있음.

- 최근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지역디성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존 지역디성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역 센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사건 10건 중 4건이 해외 메신저와의 수사협조 어려움, 피의자·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중지 결정된 것으로 나오는바,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 전환시 운영실적이 많던 상담소 배제 및 상담실적이 없는 기관 선정, 기관 선정 후 4개월 가량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권한 미부여, 연구사업 종료전 사업 개편 추진 문제 등이 제기된바,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협력과 자율규제만으로는 구글이나 기업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므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이 필요한 바, 범정부 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성보호)

-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및 종사자 재교육 예산이 부족하므로, 종사자 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및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 교체에 국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적발하여 기관, 인원 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2~3회 이상 누적된 성범죄경력 미조회 기관에 대한 조사는 없는바, 반복적으로 미조회하는 기관은 더 주시하고 누적될 경우 기관장 해임, 폐쇄 조치 등의 제재가 필요함.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반으로 폐쇄조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현장방문 등이 없어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점검은 지자체 업무라 지자체의 이행여부를 여가부가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란

입장인바, 해당 기관의 조치 이행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지자체를 파악하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법령에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적발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최소 기간인 3개월만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평화의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으므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민간단체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이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관리·보존 조례가 미비해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일부 단체들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특정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 테러행위를 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 평화의 소녀상 테러사건이 문제되어 여성가족부가 2024년 8월에 실태조사를 했으나,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단순 취합하고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2016년 정대협 등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9개국 15개 민간단체가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으나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맞불 등재 신청을 해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018년에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할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한 103억원의 반환계획이 필요하고, 2019년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10억 엔의 잔여금 59억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필요

가 있음.

- o 2024년 6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에 따라 차기 정부보고서 제출시까지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업무상 횡령 등 불법 수령한 보조금은 반환할 필요가 있음.
- o 2024년 10월 UN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란 발언을 했음에도 한국 대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함.

마. 기획조정실 등

(조직)

- o 장관 및 2국 3관 체제의 조직 중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 공석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을 촉구함.
- o 고위공무원단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산하기관 파견 등 장기간 직무배제는 근거규정이 없는 인사조치라는 점, 여성가족부 내 동일인의 반복적인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가벼운 징계처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 조직의 느슨한 규율·기강을 질타하고, 관리 강화를 요청함.
- o 외부출신 인력의 유입 및 내부 인력의 타 부처로의 이동, 위기임산부 업무의 보건복지부 주관,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의 보건복지부 상담서비스 홍보 등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신청 시간 수요에 대응하며, 신청 가구 특성에 따른 연계 미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확보 및 연계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서울시, 서울교육청,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내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중앙 디성센터와의 협력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피해·가해 현황이나 서울시 디성센터가 접수·지원한 현황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음.
- 딥페이크 영상물 중 해외 관련한 것들은 계속 삭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유 및 국회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함.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으나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맞불 등재 신청을 해 등재를 방해하여 진전이 없는데 위안부와 관련한 기록물을 등재할 필요가 있음.

4.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직접소송 지원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직접소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인적·물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V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여성가족부

가. 여성정책

(양성평등)

-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장·차관 비율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고하고, 여성정책 조율을 위한 여성정책 비서관을 두는 등 성평등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이행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성별영향평가)

-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률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양성평등담당관)

-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는 서면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것

(국립여성사박물관)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나. 가족정책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서비스이용 비용의 획기적인 지원 등 아이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적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아이돌보미 노동자 처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

(가족친화인증제도)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가족친화인증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일·가정양립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가족친화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결혼중개업)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결혼중개업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상 검색되는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각 삭제요청 및 추가 수사 의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며,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의 부정수급 적발 및 사례 파악이 가능하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주거 및 학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가족센터)

- 방문지도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리)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할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관리)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분원 설치 계획을 마련할 것

다. 청소년정책

(청소년지원사업 축소)

- 청소년 근로권익사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소년 상담버스 운영도 청소년과 농어촌지역 등의 특성상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개 혹은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위기청소년 지원)

-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고, 일시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마련을 위하여 주거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
-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10대 자살률 및 자살시도자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자살 시도자 아이들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상담사자격연수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전국 청소년상담사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억제를 위하여 엄격한 성인인증 시스템 및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전자담배 판매시 진열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것
- 청소년에 대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별 불법정보 삭제 등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2024년 관련 예산은 감소되었는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
- 청소년 도박 및 마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치유 지원 및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불법 스팸문자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확대시 인건비 편성을 통하여 사업담당자 공백을 방지하고,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이 지침에 맞게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임상심리상담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수를 책정할 것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예산 부족으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이용 인원, 급식 수량·단가 및 예산 문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것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소한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성이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퇴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 명확한 입·퇴소 기준을 마련할 것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위하여 호봉제 도입 등 사회 복지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예산을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수수료 및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청소년활동지원)

- 2024년도부터 사업이 폐지된 청소년국제교류 중 ‘청소년 국외역사문화체험활동’은 청소년 글로벌 역량 제고 및 미래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수련원의 급식단가를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급식단가 기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단가 등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침구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국립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과 부지 반환 관련 협의 및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전용 4차산업 체험센터나 미래기술체험관 등 미래기술 체험공간 조성을 검토할 것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병원비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의료기관 이용 등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라. 권익증진

(여성폭력, 스토킹범죄·교제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통계에 교제폭력을 추가하고, 유의미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논의할 것
-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통계 수집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열악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주거면적을 개선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지원 실적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므로 집행부진 사유 등을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 피난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입소율이 저조하므로 경찰, 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유관 부처들의 연계 및 홍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남성 피해자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이란 명칭을 “폭력긴급전화 1366”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데이팅메터스(Dating Matters) 프로그램처럼 청소년 교제폭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고 오프라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거나 기록관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지촌 여성 중 대법원판결 승소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성희롱·성범죄 관련 정책)

-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만화카페 ‘벌튼’에서 학생들의 성관계, 성착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벌튼에 대한 진상조사 및 만화카페에 대한 지자체·교육청·여가부·경찰 합동 일제 단속을 검토할 것
- 일본 픽업아티스트 단체인 ‘스타난 일가’의 디지털 성범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 온라인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픽업아티스트 강의란 포장 하에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네이버카페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성범죄 예방 대책을 검토할 것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군대 내(여군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파악, 사전예방, 사후조치 등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조치가 제한되어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된 곳이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성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 부처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 o 플랫폼 업체들 스스로 딥페이크 영상물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AI기본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
- o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o 디지털성범죄 익명신고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여성가족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 o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디성센터 삭제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것
- o 「성폭력방지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기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역 센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 o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에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동·청소년 성보호)

- o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
- o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해임, 폐쇄 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반 기관에 대한 종사자 해임이나 폐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지자체가 제대로 점검하는 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o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반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공개 기간을 확대할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o 평화의 소녀상 테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o 평화의 소녀상 설치·관리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o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마. 기획조정실 등

- o 근거에 기반한 인사운영, 반복적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느슨해진 조직의 규율·기강을 강화할 것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o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신청 시간 수요 및 신청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확보 및 연계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o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센터(예컨대 서울시 디성센터)와 중앙 센터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
- o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양육비이행관리원

- o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 직접소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